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9. 11.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정책」 반영
숙박업의 경우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대상에서 제외

3. 조례 개정안 : 붙임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5.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50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제2조 관련)

(단위 : 만원)

과 태 료			
부 과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명 미만의 집단급식소	5	10	30
나. 목욕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1) 영업장 총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	50	100	200
(2) 영업장 총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목욕장	30	50	100

과 태 료			
부 과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2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100	200	300
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100	200	300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다에 따른 업종은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	30	50	10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경우	5	10	30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대규모점포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경우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	100	20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5	10	30

과 태 료			
부 과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운 영업, 공연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한 경우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	50	100	20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30	50	10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5	10	30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회 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50	100	200

(주) 1.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기간
내에서 산정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별표1】(생략)					【별표1】(현행과 같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영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생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현행과 같음)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 (4) 생략	(생략)	(생략)	(생략)		가. ----- ----- ----- ----- -----배포한 경우 (1) ~ (4) (현행과 같음	(현 행과 같음)	(현 행과 같음)	(현 행과 같음)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7실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객실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나.목욕장을----- ----- -----제공한 경우 (1) 영업장 총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 (2) 영업장 총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목욕장 (3) <삭제>	(현 행과 같음)	(현 행과 같음)	(현 행과 같음)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 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생략)	(생략)	(생략)		다. ----- ----- ----- -----(환불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배포한 경우	(현 행과 같음)	(현 행과 같음)	(현 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라.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영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업종을 제외한다)가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회용 광고선전물을 배포한 때	(생략)	(생략)	(생략)		마.-----다른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다에 따른 업종은 제외한다)--- ----- --(환불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를포함한다)-- ----- ----- 배포한 경우 (1) ----- ----- 경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생략)	(생략)	(생략)		(2) ----- ----- 경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 ----- ----- 경우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바.-----가공업(대규모점포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을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경우 (1) ~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 (4) 생략	(생략)	(생략)	(생략)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사업자가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사. ----- -따른----- ----- ----- -----영화 관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배포한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영
	(1) 매장면적이 1,000 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생략)	(생략)	(생략)		(1) ----- -----경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매장면적이 165 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2) -----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 -----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4) ----- -----경우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회용품 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생략)	(생략)	(생략)		아. ----- 종합체육시설을 운영 하는 자가 회용 응원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 하는 경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주) 1.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기간 내에서 산정한다.	(현행과 같음)
--	----------

관 련 법 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 ① 법 제10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그 밖의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8.6>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4. 「공중위생 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5.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도·소매업(제5호에 따른 업종 및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② 제1항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업종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4.6]

제50조 (과태료의 부과)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본조신설 2009.4.6]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 21590호, 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 및 세부 준수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 및 세부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09.4.7]